

研究論文

1930년 조선총독부의“시험폐지”규정과 교육담론

이 경 숙*

I. 서론	V. 정기시험 폐지에 관한 교육 담론 적
II. 학무국이 밝힌 “시험폐지”의 이유: “자학 자습 기풍 양성”을 위한 정기시험 폐지	극 찬성의 논리 대 비판적 지지의 논리
III. 사회적 반응: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육계 도 “의아한” 개정	VI. 규정변경 후 학교의 실정
IV. 사회정치적 배경: 동맹휴학, 백지동맹, 그 리고 정기시험의 폐지	VII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I. 서론

이 연구는 일제시대 학교 시험제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1) 1920년대 이 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열에 비하여 일본제국의 중등학교·대학교 증설 억제 정책은 입학 “시험지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돌파하기 어려운 시험일 수록 시험이 실력에 따라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배분하는 공정한 도구처럼 인식되 지만,2) 현실에서 일본제국주의는 입학시험을 민족별·자산별로 교육기회를 불공

* 경북대학교 강사, 교육학 전공(loworld001@knu.ac.kr).

1) 이 연구는 시험을 통해 한국교육체제와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성격을 이해하려는 일련의 연구과정 중에 나온 것이다.

2) 피에르 부르디외·장 클로드 파세롱(공저)/이상호(역), 『재생산』(동문선, 2000); 미셸 푸코(저)/오생 근(역), 『감시와 처벌』(나남, 2003)은 높은 경쟁률은 시험의 공정성과 같은 외적 요소들에 대한 관

평하게 배분하는 기제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학시험지옥은 학교체제를 상급학교 진학준비체제로 변질시켜 놓았다.³⁾ 학생들의 능력을 석차로 평가하고 상급학교는 하급학교에 석차가 기재된 성적일람표를 요구하며 입학시험 석차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식민지 시기 석차에 따라 사람의 사회적 쓸모를 정하는 학생 분별⁴⁾은 시험제도의 원리였고, 그 정점에 입학시험제도가 존재하였다. 때문에 입학시험은 사회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입학시험 경쟁이 치열해가던 때,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입학시험과는 무관한 다소 “의아한” 시험규정 하나를 발표하였다. 언론과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던 규정 이른바 “시험폐지” 규정이다. 연구자는 이 규정이 발표된 배경에는 단순히 교육적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 시험제도는 하나의 교육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학무국의 “시험폐지” 규정 발표의 배경이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 규정을 둘러싼 교육 담론과 규정발표 후 학교현장의 실재를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기존 연구 중 1930년 “시험폐지”에 주목한 연구는 없다. 김동환⁵⁾이 진학준비교육을 연구하면서, 진학준비교육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책 중 하나로 정기시험 폐지를 거론하고, 이를 학생관리체제로 인식한 정도이다⁶⁾ 그런가 하면 『학교의 탄생』 저자 이승원⁷⁾은 이 규정을 두고 “입학시험의 폐지가 공식화되었다”고 잘못 적시하고 있다. 이승원의 지적과는 달리, “시험폐지”는 학내 정기시험의 폐지를 말한다. 연구자가 1930년 “시험폐지” 규정이라는 작은 역사적 사건에 주목하는 첫

심을 합격자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놓는다고 보았다.

- 3) 박철희, 「식민지기 한국중등교육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2002); 김동환 「일제강점기 진학준비교육과 정책적 대응의 성격」, 『교육사회학 연구』, 제12권 제3호(2002)
- 4) 손중현은 시험위주의 학력사회를 민족분할정책으로, 백순근은 석차에 의한 평가는 적극적 통제장치로, 조행평가는 소극적 통제장치로 이해한다. 손중현 「일제 제3차 조선교육령하 학교교육의 식민지배 관행」, 경북대 박사학위논문(1993); 백순근 「일제강점기의 교육평가」(교육과학사 2003).
- 5) 김동환, 앞의 논문, 44쪽.
- 6) 김동환의 “시험폐지”규정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김동환의 연구는 “시험폐지” 규정 자체를 연구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어떻게 학생 관리기제가 되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 7) 이승원은 “1930년엔 조선총독부령 제73호 및 78호에 의거하여 입학시험 폐지가 공식화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승원 『학교의 탄생』(휴머니스트, 2005), 55 쪽

번째 이유는 일본제국이 시험제도 변경을 통해 무엇을 의도하였는지 밝히고자 함이며, 둘째로는 이 규정에 대한 교육계의 담론을 통해 당대 교육계의 시험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인식은 지금의 교육계와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시험폐지” 규정의 적용이 학교현실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이 사건을 여론화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별건곤》, 《동광》 기사를 교육 담론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학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930년대 학교 교우회지들, 각 학교 역사 관련 책들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1930 년대에 대구사범학교와 대구고등보통학교를 다녔던 두 분을 면담하였다.

II. 학무국이 밝힌 “시험폐지”의 이유: “자학자습 기풍 양성”을 위한 정기시험 폐지

1930년 9월 18일 조선총독부는 중등학교의 학교규칙들을 개정 발표한다 이 발표는 이후 《별건곤》, 《동광》과 같은 잡지는 물론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 여러 신문들에서 길게는 20 회에 이르는 연재 기사를 실을 만큼 상당히 파급력 있는 사건이었다. 개정 발표안은 사범학교, 중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등 중등학교의 시험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였다. “각 학교의 과정 수수료 또는 모든 교과와 졸업에 인정하는 데는 평소의 성적을 고사하여 이로써 정한다”는 것이다

이 발표를 당시 언론들은 “시험폐지” 혹은 “시험철폐”라는 코드로 읽는다. “평소의 성적을 고사한다”는 조항을 곧 “시험폐지”로 읽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당시 중등학교의 과정 수수료나 졸업을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하고, 시험은 학기시험, 학년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낙제를 당했다. 이런 제도 아래에서 “시험성적”이라는 용어가 빠진 채 “평소의 성적을 고사”하여 과정 수수료나 졸업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곧 중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치는 학기시험, 학년시험의 폐지를 이르는 의미였다.

<표 1> 1930년 시험관련 규정 개정 전후 내용 비교표

	개정 전(1929년 현재) ⁸⁾	개정 후(1930. 9. 18) ⁹⁾
조항의 내용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모든 학과의 졸업을 인정하는 데는 평소의 학업 및 시험성적을 고사하여 이로써 정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험에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평소의 학업성적만을 고사하여 이로써 정할 수 있음. 시험은 학교장의 뜻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음.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모든 학과의 졸업을 인정하는 데는 평소의 학업성적을 고사하여 이로써 정한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는 어떤 이유로 근대학교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된 정기 시험¹⁰⁾을 없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던 날 개정의 이유를 조선총독부 훈령 제43호로 밝히고 있다.

대저 중등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본지를 관철케 하려면 생도로 하여금 상사 자진하여 배우고 즐겨 익히는 기풍을 순치하고 일의전심(一意專心) 소정의 과정을 리수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중래의 예에 徵컨대 학기와 학년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자칫하면 생도로 하여금 한결같이 시험을 위해 면학케 하는 따위의 폐(弊)가 적지 않다** 하겠다.今次 이 개정을 행하여 自今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는 데는 평소의 학업성적을 고사하여 이를 정하고 **한층 自學自習의 氣風을 養成**케 하려함은 오로지 시폐(時弊)를 광장(匡正) 하여서 교육의 신창(伸暢)을 도모하려는데 불외(不外)하다(《朝鮮總督府 官報》, 제 1115호(1930. 9. 18), 강조는 연구자, 이하 동일).¹¹⁾

8) 朝鮮總督府 學務局, 『朝鮮教育法規』(行政學會印刷所 1929). 각 중등학교의 학내시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범학교규정 제80조, 중학교규정 제53조, 고등보통학교규정 제47조, 고등여학교규정 제 65조,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 제54조, 실업학교규정 제24 조 이 조항들은 학교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9) 《朝鮮總督府 官報》, 제1115호(1930. 9. 18), 조선총독부령 제3 호78 호

10) 한성사범학교 규칙(1895. 7. 23) 제24조에는 시험을 임시·정기·졸업으로 나누고 이하 조항에서는 학기시험과 학년시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규칙(1900. 9. 3) 제6 관에서는 시험을 매 월중, 학기, 학년시험으로 나누고 있다

11) 이하 지문들은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원문의 한자를 가능한 한 한글로 바꾸고 띄워 쓰기, 맞춤법, 마침표는 읽어서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띄워 쓰기 맞

위 훈령에 따르면, 정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위해 면학”하는 폐단이 많다고 조선총독부는 진단하고 있다. 이 진단을 기초로, 기존 폐단을 해소하고 교육을 변창케 할 방법, 즉 “자학자습 기풍 양성”을 개정의 이유로 내세웠다.

1930년 경성사범학교 교사 조재호¹²⁾는 《별건곤》에서 조선총독부의 개정이유를 뒷받침해 준다. 그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밝힌 “자학자습 기풍 양성”의 이유를 사회가 변화된 인물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파하였다. “실사회는 모든 지식을 가만히 만히 암송저축하여 잇는 산 백과사전식 인물을 요구함이 안이요 실사회의 活문제를 스사로 구하고 스사로 해결하고 스사로 살어가는 인물을 요구하고 잇다.” 하기에 “스사로” 하는 인간은 자학자습하는 방식을 통해 양성해야 하고, 그런 인물은 평소의 공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정의 또 다른 이유를 “종래의 정기시험제도는 비교육적이면서도 생도의 체력을 흠쳐가는 괴물”이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특별히 중등학교에 “시험폐지” 규정을 실시하는 이유¹³⁾는 “현재 교육계를 조망하건대 학교가 상급일수록…교육적으로 연구하는 태도가 박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¹⁴⁾

III. 사회적 반응: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육계도“의아한”개정

“자학자습 기풍 양성”이라는 개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규정개정 전 교육계에서 “시험폐지”에 관해 사전에 논의된 바도 없거니와 개정의 움직임이 미리 포착

춤법, 마침표도 수정하여 신는다

- 12) 조재호, 「중등학교시험폐지 가부 및 그 실시에 대한 일고찰」, 《별건곤》 제4 호(1930. 11), 32~35쪽. 조재호는 1930년대에 경성사범학교 교유(敎諭)로 있다가 1941년에는 학무국시학관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이이다.
- 13) 보통학교 규정 제36조 각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전교과의 졸업을 인정하는데는 별도로 시험을 치지않고 아동의 평소성적을 고사하여 이로써 정함, 朝鮮總督府 學務局 앞의 책, 184 쪽을 보면 이미 초등학교에는 정기시험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동아일보》 사설(1930. 9. 19)에서 초등교육에서도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적은 것이나, 경신학교 교사 안재학이 “소학교도 시험을 과하는 형편”에서 중학교 시험철폐가 제대로 실시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힌 점(《조선일보》, 1930. 10. 16)에서 보면, 초등과정의 정기시험은 규정과는 달리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4) 조재호, 앞의 글, 32~34쪽.

되지도 않았다. 개정 발표를 접한 기관과 교육자들이 “기계식·주입식 교육,” “아동건강”의 문제를 들어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정이 의아하다거나 일방적이라고 한 반응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개정 열흘 후부터 총 9회에 이르는 관련 기사를 연재하는데, 연재 머리말에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다.

총독부학무국에서는 부령으로써 전조선중등정도 학교를 통하여 종래에 시행해오던 시험제도의 철폐를 단행하였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한번 발표되자 각 방면으로 이상한 충동을 주어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물론 일반인사에게도 의아(疑誦)와 시시비비의 여론이 不無하니 전자는 저간이 무시험제도가 발표되기까지에 이른 경로를 의외시하는 자에게 있어서 당연히 일어날 것이요 후자는 돌연한 교육상개혁을 당면하여 그 이론적 근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직접당사자인 시내 각 중등학교 교무당국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의견과 장래방침을 종합하여 이를 독자제위에게 소개하라한다(《조선일보》, 1930. 9. 28(4) 일자).

이는 연재담당 기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중앙고등보통학교 이하 고보 백봉제 교사 역시 “이번 시험철폐문제로 말하면 일반학교에서 요구하였거나 한 것이 아니요 학무당국의 의사에서 나온 것”¹⁵⁾이라고 적고 있다. 중등학교 최진순 교사 역시 《별건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9월 18일 조선총독부 관보에 돌연히 시험폐지에 대하여 총독부령으로…발표되었다. 참으로 의외이며 돌연이다. 9월 18일 이전에 여계 대하여 교육자간에 하등의 말이 업섯다. 실지 교육에 관계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의외며 돌연한 사실임으로 모두가 펍 막연하게 침에 생각되었다.¹⁶⁾

때문에 이화여고보 김창제 교사의 말처럼 규정 변경에 대한 의혹감, “이것은 아마 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분은 공통하게 늦기실 점”¹⁷⁾이었다. 1920·30년대 “살도하는” 입학시험 경쟁률로 입학시험의 폐단에 대한 여론은 들끓었지만 학내 시

15) 《조선일보》, 1930. 9. 28(4) 일자

16) 최진순, 「올해 일년 조선은 엇더케 動했나?」, 《별건곤》 제5호(1930. 12), 15 쪽

17) 《조선일보》, 1930. 9. 31일자

힘 개정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물론 규정 변경을 짐작해 볼만한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일본은 이미 1900년에 초등학교 내 경쟁시험의 폐해를 이유로 정기시험을 보지 않도록 규정을 정했고, 18) 1927년에는 일본 내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에서도 정기시험을 폐지하고 평소 성적으로 고사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조선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짐작하는 기사가 매일신보에 사설¹⁹⁾로 실린 적이 있다. 그리고 학기·학년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조선 내부에서도 있었다. 학부가 편찬한 『보통교육학』에서 비록 보통학교에 관한 내용이지만, 정기시험은 발육에 해만 될 뿐이니 평소의 학업으로 성적을 고사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²⁰⁾ 그리고 구자학은 “대저 교사가…생도의 학력을 평상시에 검정치 못하고 일(一)시간에 총망히 기술한 일편답안으로 일학기 혹 일학년 성적을 검정코즈함이 무리하며…교사는 교수시에 구두발문 혹 동작관찰법 등을 의해야 각 생도의 학력을 간정(看定)”²¹⁾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지적은 드물기는 하였지만 1910년부터 있어 왔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다가 그리고 일본 내에서 바뀌었음에도 변함없다가 왜 30년에 규정이 변경되었을까 언론과 교육자 모두가 당혹스러웠던 시험규정변경은 정말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순수한 교육열정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 “자학자습”에 대한 열정에서 규정 변경이 나왔고 당대 교육계에도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면, 교육계는 왜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을까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동안 규정을 변경할 때 대체로 사회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입학시험의 경우 “입시지옥” 여론에 조선총독부가 진학준비를 금지하거나, 황국신민화 정책에서 신체검사를 강화하거나, 태평양전쟁 이후 대학교입학시험과목에서 영어를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또 1910년 한일병탄, 1919년 만세운동, 1937년 중일전쟁과 같은 정치적 사건이 있고 그 때마다 조선교육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1930년 정기시험폐지 결정의 배경을 사회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 天野郁夫, 『試験の社會史』(東京大學出版會, 1995), 189~191쪽.

19) 《매일신보》, 1927. 8. 9(1)일자.

20) 學府編纂, 『普通教育學』(韓國政府印刷局 1910), 152~154 쪽

21) 구자학, 「교육시폐」, 《대한홍학회보》, 제12호(1910. 4), 44 쪽

IV. 사회정치적 배경: 동맹휴학, 백지동맹, 그리고 정기시험의 폐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글이 하나 있다.

다시 일보를 나가서는 시험제도의 폐지의 범위를 초등교육에까지 확장함이 타당하다. 시험제도의 弊를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으로 난호아 비교할 때는 차라리 후자에 있어서 일층 심대한 감이 업지 못할 것인데 이제 먼저 **중등교육**에부터 폐지를 실시한 것은 **주요목적이 교육계의 고수(矯誣)인 스트라의의 방지에 있지 안흔가 의심하게 하는 배어니와** 그것은 어찌되었든지 필요있는 개정일진대 그 범위를 중등교육에 국한할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동아일보》, 1930. 9. 19. 사설).

“시험폐지” 규정 발표 다음 날, 동아일보가 사설로 낸 기사이다. 대부분의 글이나 기사가 “의아”하다고 밝혀놓았던 개정의 배경을 동아일보에서는 “스트라의의 방지에 있지 안흔가”라고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에서 사설로 제기할 만큼 1930년에 “스트라의의” 즉 동맹휴학이 많았는가를 먼저 살펴보자. 1929년 10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계속된 광주학생 운동은 어느 해보다 많은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계기였음은 분명하다. 1929년 10월 광주사건 직후부터 1930년 2월 초순까지 운동에 참가한 학교가 194교(초등 54개교, 중등교육기관이 136개교, 고등교육기관이 4개교, 참가학생수가 약 54,000여명이었고, 퇴학처분 582명, 무기정학 2,330명, 피검자가 1,462명이었다.)²²⁾ 특히 정기시험을 폐지한 중등학교의 동맹휴학 참가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학생들은 민족적 저항운동으로 동맹휴학을 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백지답안을 내는 “백지동맹”을 단행하였다

1929. 12월 : 춘천고보생 400여명 시험거부(《중외일보》, 1930. 1. 13)

1929. 12월 : 동맹휴학으로 조기동계방학(광주시내 중등교육기관 휴교조치
서울시내 각급학교 휴교조치: 휴교로 학기시험을 연기), 송실전
문학교 백지동맹(12. 14), 원산상업학교 백지동맹(12. 15), 광성·

22) 김소진, 「광주학생운동에 관한 일연구」, 『숙명한국사론』, 제 권(1993), 160 쪽

평양농업·승인·함흥·영생여고보·영생·평양여고보 백지
동맹과 맹휴(12. 16)

1930. 1월 : 광주고보 1930년 1월 9일, 10일의 학기말시험에 백지동맹. 백지동맹 주모자 17명 퇴학처분(《동아일보》, 1930. 1. 11(3), 1930. 1. 13(2))
1930. 1월 : 광주여자고보 1930년 1월 10일 학기말시험에 백지동맹. 백지동맹 주모자로 15명 퇴학처분(《동아일보》, 1930. 1. 11(3))
1930. 1월 : 평양부내 7개교(송도고보, 호수돈고보(1월 9일), 미리흙상업학교, 송실전문학교 등) 교장회의에서 재시험 결정(《동아일보》, 1930. 1. 10)
1930. 1월 : 휘문고보 3,4학년 2학기말 시험 백지동맹, 송도고보 백지동맹
1930. 2월 : 평양정의여자고보(《동아일보》, 1930. 2. 18(2))
1930. 3월 4일 : 경신교 학기시험에 10여명만 출석 400여명 전교생 시험거부(《중외일보》, 1930. 3. 5)
1930. 7월 : 보성고보, 학기시험없이 그대로 방학 1학기 시험은 부득이 2학기 초로 연기(『보성80년사』, 415쪽)

위에서 보듯이 1929년 말에서 30년까지 동맹휴학과 백지동맹은 계속 되었다. 광주고보의 경우 1월 8일 개학을 하고 1월 9일부터 치르는 2학기 정기시험에 백지동맹을 하였고, 이어 또 다시 백지동맹을 결의하다 주모자가 퇴학당하였다. 광주여고보는 1월 10일에 전학년이 백지동맹을 단행하였으나, 당국의 엄중한 경계 아래 학교가 13일 다시 시험을 치자 이광춘이 “최후까지 백지동맹을 계속하자고 자못 비통한 열변을 장시간 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²³⁾ “1930년 1월의 시위에 이어 그 해 7월에도 하기방학과 학기시험을 앞두고 다시 ‘연례행사’와 같은 동맹휴학”²⁴⁾ 있었다. 학교와 경찰은 학생들의 동맹휴학에 가혹한 처벌을 내렸던 만큼이나 동맹휴학의 연장선인 백지동맹에 대해서도 폭압적 진압을 자행하였다. 광주고보는 1월 9일 백지동맹으로 17명이 퇴학당하였고, 15일 역시 백지동맹 주모자로 48명을 퇴학 처분하였다.²⁵⁾ 광주여고보에서도 이광춘을 비롯하여 15명

23) 《중외일보》, 1930. 1. 15(3) 일자

24) 보성중고등학교, 『보성80년사』(학교법인 동성법인, 1986), 413쪽.

이 퇴학처분을 당하였다. 백지동맹의 김새가 있다거나 백지동맹이 있으면 경찰이 학교의 협력 아래 학교내외를 감시하였다.²⁶⁾ 학생들의 집단적인 시험거부는 학교 체제를 뒤흔드는 저항이요, 사회를 향한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근대학교가 ‘목적·내용·방법·평가 체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평가의 거부는 학교와 교사가 완결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해활동이며, 근대학교의 평가결과가 학생의 사회적 쓸모를 결정하는데 중요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당시 계속되는 동맹휴학을 시험치기 싫은 학생들의 심리현상으로 축소 설명하는 사회적 인식도 자리 잡고 있었다. 언론사가 기존의 동맹휴학을 “시험기 앞두고 빈번한 맹휴,” “시험입박과 학해파란”²⁷⁾과 같은 표제로 보도하는 관행에서, 동맹휴학의 사회적 이유를 덮어버리고 동맹휴학을 학생들의 시험기피라는 심리문제로 일축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 ‘시험지옥이 동맹휴학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하며,²⁸⁾ 《개벽》에서는 이렇게도 적고 있다.

내용으로 盟休에 관계된 학생 편에 대하여서 一言할 것은, (3) 가튼 맹휴이라도 그 사건이 每樣 炎天(每樣 炎天)이 되어 오는 하계방학을 임시해서 생기는 것은 校당국자 及 學友父兄은 물론 일반의 致意(致意)를 바들 위험이 있다는 그것이다. 학생맹휴의 예방에는 無試驗 注射가 제일이라는 만화를 보게 된 과 가튼은 正히 이 편의 소식을 전하는 것인 바,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잇던 업던 여하간 학생들은 汲히 생각하여 볼 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²⁹⁾

동맹휴학이 매년 시험기에 일어난다는 지적, “무시험 주사”가 동맹휴학예방에 제일이라는 풍자가 있을 정도였다면, 당시 기성세대가 동맹휴학을 보는 시각이 곱

25) 송건호, 『송건호 전집 3: 한국현대사』(한길사, 2002).

26) 광주고보는 1월 9일 백지동맹으로 17명의 학생들을 퇴학 처분하였는데 학생에게는 알리지 않고 학부모에게만 전보통지 하였다. 학교에 의해 퇴학당한 지도 몰랐던 학생들이 1월 13일 학교에 등교했을 때, 광주고보는 이 학생들을 학내에 있는 경찰관에 넘겨준 일이 있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1월 15일에는 광주고보 백장(白井) 교장이 광주경찰서 고등계주임과 전남도 경찰부 고등과 형사, 학부형회 위원과 비밀회합을 갖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30. 1. 13·15일자). 그 외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도 백지동맹 소식이 알려지면 학교내외에 경찰이 와서 감시하였다.

27) 《동아일보》, 1927. 7. 1(2)일자, 1928. 6. 20(5)일자

28) 「학해의 불상사 맹휴와 그 대책」, 《동광》, 제19호(1931. 3), 5쪽.

29) 「朝鮮苦」, 《개벽》, 제49호(1924. 7), 17쪽

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일반의 인식이 이리할진 데 조선총독부의 인식은 어떠하였을까.

일전 모 신문의 보도에 의하건대 작년 1년 중에 쏘 조선에 발생한 학생맹휴사건이 무려 83건이라는 기록을 보이고 다시 금년에 들어서는 1월 이전 10월까지 10개월간에 발생한 건수가 57건이라 한다…이러한 역사에도 예를 볼 수 없는 숫자에 대하여 학교와 및 감독관청인 학무당국에서는 그것을 어더케 보고 있는가?

頑固하기 수세기를 뒤진 그들은 학생 사건의 원인의 전부를 「나태한 학생의 시험을 기피하는」이라든가 「불온사상에 맹목적으로 부화하여」라든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년배의 맹동(盲動)이라」든가 하는 피상적 단안을 내리어 왔다.³⁰⁾

《별건곤》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동맹휴학을 “나태한 학생의 시험을 기피하는” 현상쯤으로 치부했던 것이다. 이 인식에 기반해서 조선총독부가 시험규정을 개정하였다면, 평가를 일상적으로 실시(“평소의 고사”) 함으로써 학생들의 집단적인 정기시험 거부행위와 동맹휴학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1930년 “시험폐지” 규정 발표의 이유를 학생동맹휴학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첫째 입학시험처럼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었음에도 30년에 “시험폐지” 규정이 느닷없이 발표되었다는 점 둘째 식민지 시기 교육규정의 변화가 사회적 이유에서 비롯되었으며, “시험폐지” 규정이 발표된 시기가 광주학생운동으로 동맹휴학이 빈발하던 1930년이라는 시점 셋째 평상시 동맹휴학의 이유를 학생들의 시험치기 싫어하는 심리 탓으로 돌리던 조선총독부의 인식으로 미루어보건대, “시험폐지” 규정은 일상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인식할 수 있다.³¹⁾ 즉 조선총독부는 평가제도의 변경을 학생관리 수단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30) 「時相漫話」, 《별건곤》, 제35호(1930. 12), 62쪽.

31) 개정된 규정은 조선 내 일본인 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규정이 일본인 학생들에게 조선인 학생들처럼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제국으로서 “충량한 국민” 만들기를 위해서 일본인에게도 시험은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V. 정기시험 폐지에 관한 교육 담론: 적극 찬성의 논리 대 비판적 지지의 논리

정기시험 폐지 규정이 발표되자 당대 교육계 인사들이 이 논쟁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폐지” 규정이 “의아”하다고는 하지만, “의아”함의 사회적 이유를 찾지도 않았고 조선총독부의 발표에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최진순은 이렇게 적는다.

본시 조선에서 교육문제연구를 일반으로 등한히 하여왔다. 더욱 중학교 교육자가 더 등한히 하여왔다. 물론 이와 가터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도 만히 잇겠지만 우선 그 증대한 것을 들면 제1, 민간 교육연구자의 주창을 도외시키고 **관변(官邊)측 의견만 절대시한 것**, 제2, 사립학교 당국자들이 교육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다만 관변측 지시에 응하고 하등의 비판이 없었던 것이다.**³²⁾

일제시대 관변이라 하면 조선총독부이고, 조선총독부의 발표는 절대적이고 감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험폐지” 규정 논의가 교육 내부로만 시선을 돌린 미시적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9회)와 《별건곤》에 실린 교사들의 논의(34호, 35호), 정인섭의 《조선일보》 연재기사(9회),³³⁾ 주요섭의 《동아일보》 연재기사(20회)³⁴⁾를 중심으로 중등학교 규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자.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개정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논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식이거나 또는 개정을 일단 수용한 뒤 예상되는 문제를 우려하는 식이다. 이들 논리를 이 글에서는 전자는 적극 찬성의 논리, 후자는 비판적 지지의 논리³⁵⁾라 이름 하겠다. 규정개정을 둘러싼 두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극 찬성을 주장하는 이들(주요섭, 조재호, 최규동이 대표적이다)의 논리

32) 최진순, 「올해 일년 조선은 엇더케 動했나?」, 《별건곤》, 제35호(1930. 12), 16쪽.

33) 정인섭, 「시험철폐 후 영어 성적고사의 私案」, 《조선일보》, 1930. 12. 9~19일자

34) 주요섭, 「시험철폐와 그 대책」, 《동아일보》, 1930. 10. 19~11. 14(20 회) 일자

35)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후자의 입장이 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만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이 있다.

는 이렇다. 첫째, 기존 정기시험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다. 일정이 미리 정해진 정기시험은 학생들을 시험 때문에 공부하게 만드는 타율성이 있고, 학생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둘째, 정기시험의 폐지로 인하여 자발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믿음이다. 학생에게는 기계식·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학자습”하게 만드는 계기이자,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셋째, 지식전달편중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며, 이는 “아메리카”처럼 현대교육으로 가는 진보이다

비판적 지지자들(장용하, 김창제, 정대현 등이 여기에 속한다)³⁶⁾도 기본적으로 시험규정 변경에 동의한다. 그 바탕 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학교의 높은 입학경쟁률이 존재하는 한 학기·학년시험의 폐지는 부분적인 조치밖에 될 수 없다. 둘째, 학급당 인원수가 6·70명에 달할 만큼 많고 수업시수가 적은 학과목의 경우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평상시에 매기는 것이 불가능한 교육환경이기 때문에, 시험규정 개정은 지나치게 이상적 또는 비현실적일 뿐이다. 셋째, 예고 없이 평상시 치는 시험은 학생들을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하고 오히려 면학을 게을리 하게 만든다.

이 두 입장을 대변해주는 좋은 사례를 논자들은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 찾는다. 정대현은 일본에서 정기시험을 폐지하였다가 “학생들의 고통만 더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³⁷⁾ 다시 시험제도로 환원하였음을 증거로 비판적 지지를 보낸다. 반면 휘문고보 교장 이윤주는 미국에서는 이미 개정된 규정처럼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철폐 자체가 세계추세이고, 진보라고 규정한다

세계교육사상의 경향이 점점 재래의 부자연한 수단으로부터 자연한 수단으로 기계적으로부터 사고적으로 추이되어갈 때 조선만 그 과권(過眷)을 버서나 독자의 방향을 걸을 수는 업겠지요. 자연히 조선도 그들의 틈에 끼여 보무당당한 전진을 하여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엇질 수 업시 그들의 실행하는 방법에서 長한 것을 취하고 短한 것을 사하여 직접 우리의 제도에 응용하지 안하면 안됩니다.³⁸⁾

36) 비판적 지지자들은 정기시험 폐지를 한편 찬성하고 한편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고 우려하는 논지가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때문에 비판적 지지자들의 논리는 쟁점에 따라서 찬성자가 되기도 하고 비판자가 되기도 한다.

37) 정대현, 《별건곤》, 제5호(1930. 12), 104 쪽

예나 지금이나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보다 좀더 선진적인 외국의 사례를 빌어오는 방식은 유사하다.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식의 방법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중주국이나 제국들의 권위는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엘리트이고, 진보이며, 앞으로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논증방식이 외국사례의 제시라면, 논증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 “학급인원수 넘우 만타”

정기시험을 폐지하고 평소 성적을 고사하는 방법으로 교사가 묻고 학생이 답하는 시문, 숙제검사, 간단한 지필검사, 예습과 복습의 확인 등이 제안되었다. 오늘날 수행평가방식에 해당한다. 오히려 지금의 평가방식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정기시험을 수행평가로 대체한다는 규정이다.

조선총독부 통계에 비추어보면 1930년 학급당 인원이 4~50 명³⁹⁾이지만, 논의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과 교장이 말하는 학급당 인원수는 6~70명이다. 열악한 학급환경에서 수행평가 시행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첫째 현재의 중등정도에 잇는 학교의 시설을 가지고서는 이 방안을 실시하기에 不少한 곤란을 격그러라고 봅니다, 왜 그러나하면 학교수효는 만코 교원의 손도라가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잇는 것인데 아프로 이 무시험제도가 실시되어 평소성적을 채점고사의 기본으로 삼는다면 거귀에 모순과 무리가 생기지 안홀는지요? 간략한 예를 하나들면 수신(修身) 시간을 두고 봅시다. 일주일에 한 시간 만학기에만 해야 열시간 내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학년 가튼 반은

38) 이윤주, 《조선일보》, 1930. 10. 5일자

39) <표 2> 1930년 학급당 인원수

학교	공립고보	사립고보	공립여자고보	관립사범학교	공립실업학교	사립실업학교
학급당 인원	37.8	53.1	43.2	32.9	41.4	50.9

* 이 수치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30)』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 학급당 인원의 계산은 학교종류별 전체 학생수를 학급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비 동맹휴학 낙제 등으로 인해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낮은 학년일수록 인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한 반에 육칠십명을 수용하는 형편이니 그들의 성적을 고사하는데 매시간 십분식의 시간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한 학기간에 열시간밖에 아니되는 분량을 가지고 어쩌케 그들의 성적을 공평정대하게 고사할 수 잇겠습니가.⁴⁰⁾

학급당 인원수를 고려하면 한 명의 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논지이다.

그러나 중등학교 교장 최규동은 중등학교 초창기에 학급당 인원수가 2백여 명이었는데 전혀 “오진없이 평가 하였다면서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결의와 노력이라고 주장한다.⁴¹⁾ 주요섭 역시 6~70명 정도의 인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학생 개개인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겠지만, 성적산정 기준이 명확하면 해결해 갈 수 있기에 교사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일학교에 생도수가 너무 많아서 시험업는 성적 작성하기 곤란하더라고 하는 의견이 대개 일치된 듯 하다. 그리고 생도수는 일급에 대략 칠십명식을 수용하는 형편이라고 말한다. 일급에 칠십 명이 너무 많을까? 그리 생각되지 않는다. 교수에 유의하는 교원이면 칠십명 일급쯤은 불과 2개월 내로 일주 3시간 가량 잡고 대개 친히 알게 될 수 있다 또 설혹 생도수가 너무 많아서 매생도의 특징을 일일이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숙제공급을 계획적으로 분류하여 시행하는 동시에 필자가 소개한 바대로 일일복습, 월시 및 학급 norm) 까지를 실행하게 되면 성적작성에 그리 크게 곤란하리라고는 볼 수 없다.⁴²⁾

비판적 지지자들에게 과다한 학급당 인원수는 평소 고사를 하지 못할 결정적 이유가 되지만, 적극 찬성론자들에게 학급당 인원수는 비록 장애요인이야 되겠지만 교사의 굳건한 의지로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학교현장 개혁안이 제기될 때마다 교육환경 조성이 먼저인가, 교사들의 의지와 노력이 먼저인가 하는 논쟁은 아직도 되풀이된다. ‘문제는 교사의 의지’라고 말하는 이들은 항상 현재보다 훨씬 열악했던 과거를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학생수가 40여명일 때는 60명이었

40) 김창계, 《조선일보》, 1930. 9. 31일자

41) 최규동, 《조선일보》, 1930. 10. 3(4)일자.

42) 주요섭, 《동아일보》, 1930. 11. 14일자

던 때를, 60명일 때는 200명이었을 때도 교육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과연 두 시기의 교육 질이 동일한가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조건의 문제를 내세우는 이들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조건을 이유로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 의심이 필요하다.

2.“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이 된다” 대“게을러진다”

평소 교사로 학생의 능력을 재는 평가행위는 교사에게 자유로운 평가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행위이며, 학생들에게는 일상적인 평가를 통해 시험 불안과 부담을 줄이며 자학자습의 기풍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정인섭의 “시험없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없을까”(41명 학생 대상)라는 설문에서 27명(66%)이 “가능하다,” 13명(32%)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⁴³⁾ 답변대로라면 학생들은 시험없이도 충분히 공부할 자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와 학생 모두 잦은 평가, 불시에 치는 평가로 귀찮아지고 일상적인 평가행위가 학생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게을러지게도 만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논리에서 논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펼친다. 그 중 주요섭은 평소 교사를 통해 무엇보다 교사들이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번 시험철페는 교원의 손으로부터 아주 간편한 成績製作機를 빼아서 버린 셈이 된다. 이 편리한 기계(그러나 유해한 機械)를 빼앗긴 교원은 아프로는 좀 더 객관적 좀 더 상태적 좀 더 공정한 성적을 작성하기에 노력을 차해야 할 것이니 교원의 책임이 한층 더 중해진 것을 늦길 따름이다.⁴⁴⁾

주요섭은 교사들에게 “편리하지만 유해한 기계”였던 정기시험을 없앴으로써 교사들이 분발할 수밖에 없고, 분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평소의 교사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기시험 폐지는

43) 정인섭, 앞의 글 <표 4> 참조

44) 주요섭, 《동아일보》, 1930. 11. 14일자

교사들에게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 본다.

또 다시 시험철폐로 말미암아 생도들이 더 게을러지지 안홀까하고 의심하시는 분도 있다. 이것도 내 생각에는 돌이켜 그와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미터진다...일단 시험이 철폐된 이상 그의 성적이 일상복습성적 여하로 결정될 것을 알게 되면 생도들은 별 수 업시 매일학업을 학습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필자가 이 소론에서 설명하려고 애쓴 몇 가지 방법까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면 생도는 부득이 매일 부즈런하지 안홀 수 업슬 것이다.⁴⁵⁾

적극 찬성자인 최규동 역시 교사는 전보다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 충실”하게 되고, 학생들도 “태만의 습성을 업시하여 학과에 근직착실케 하는” 제도라고 말한다.⁴⁶⁾

긍정적인 인식에 반해서 한정된 수업시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한번 받은 학생들은 정기시험 때보다 더 게을러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 무시험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을 전보다 게으르게 만들지 안홀가 걱정됩니다. 압서도 말한 바와 가티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서는 교원의 손이 각 학생에게 자조 도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과 어학가튼 것은 그 폐단을 방지할 수 잇지만) 기억학과가튼 것은 일일이 학생을 각각 불러 이르켜서 문답하지 안흐면 아니되는 관계로, 학기 초에 한번 불러 이르켜수면 그 학기 안에는 내내 차례에도 오지 안거나 그터치 안흐면 몇 번 차례가 도라온다 하드라도 임기응변으로 그때 그 고비를 **한 성적으로 넘길 수 잇습니다. 그럼으로 오히려 학생들은 피가 나서 태학(怠學)의 악폐가 생기지 안홀가 우려가 됩니다.⁴⁷⁾

숙명여고의 이원식 교사는 특히 문제가 되는 이들은 “태만한 학생”들이라고 본다. 이들은 기존의 정기시험을 칠 때는 성적을 통해 자신의 태만과 무식을 알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태만한 학생”들이 “자신의 태만과 무식을 인식할 수 업

45) 주요섭, 위의 기사

46) 최규동, 《조선일보》, 1930. 10. 3일자

47) 김창제, 《조선일보》, 1930. 9. 31일자

계” 되는 “악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3.“객관적 표준을 개발하면 된다”대“채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규정변경 전에도 채점의 공정성 시비가 종종 있어왔다. 예를 들면 채점의 공정성 문제로 1929년 4월 해주고보 5학년생들이 도학무국에 도화(圖書) 선생을 면직 처분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적 있다.⁴⁸⁾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규정이 성적의 공정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지는 또 하나의 논쟁거리였다.

평소의 고사에 있어서 공평정대하게 처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자칫하면 학생교원간의 애정관계 가지하여서 공평을 기하기 어렵고 학생의 품성훈육에 악결과를 가져 올 염려가 있습니다...교원과 학생간의 관계가 이 제도 이전의 관계보다 더욱 악화하여질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⁴⁹⁾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가 두텁지 않다면 채점 공정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동덕학교 교장 조동식은 교사와 학생간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한다 “이 시험철페란 다른 제도와 달라 교사와 학생간에 접촉이 만하여 되고 또한 평소의 성적으로 말미암은 공평문제가 중대하게 걸쳐잇는 터에 이만한 용의와 각오가 없다면 무엇으로써 이것의 완전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⁵⁰⁾라고 염려를 표시한다.

이런 우려에도 주요섭은 집요하게 시험철페가 계기가 되어 “무지한 교원, 게으른 교원, 무책임한 교원”이 아니면, 즉 객관적 표준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교원이라면 교사와 학생에게 공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시험철페로 말미암아 생도와 교원간에 불길한 성적관계가 성립되거나 안홀가하고 넘려하시는 이도 있다. 간편한 성적제조기계를 일코 어찌할 바를 몰고 헤매는 무지한 교원, 게으른 교원, 무책임한 교원은 물론 생도와 감정을 사게 될 것이다. 만흔 성적제작에 성의를 뵈이고 새것을 응용할 줄 알고 생도를 이

48) 《조선사상통신》, 1929. 4. 5일자; 《조선일보》, 1929. 4. 6일자

49) 김창제, 《조선일보》, 1930. 9. 31일자

50) 조동식, 《조선일보》, 1930. 10. 7일자

해할 줄 아는 교원에게는 이 개선은 돌리어 사제간의 交誼를 더 두텁게하는 기회가 도리 것이 더욱이 이 점에 잇서서 재래식 주관적 성적표를 떠나 객관적 표준을 사용할 필요를 더욱 늦기게 된다.⁵¹⁾

주요섭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객관적인 채점, 기준(norm)을 기준으로 한 정상분포곡선, 다양한 평가방식 등을 소개하면서 이를 사용한다면 시험의 공정성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능하다고 보고, 자신의 사례와 이론을 소개하였다.

4. “진보이다” 대 “한낱 이상이다”

정기시험의 폐지를 현대 교육의 추세를 정확하게 읽은 진보요,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김창제는 “현대교육의 동향이 교재로부터 방법으로의 진전, 순객관적으로부터 주관으로의 태도, 외부적으로부터 내부적으로로의 침윤의 경향을 띠고 잇는 것은 엇질 수 업는 시세의 요구” 이기에, 규정 개정은 “시대사조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⁵²⁾했다고 보았다. 장용하는 이보다는 조금 유보적이다. 시험철폐안이 분명 진보적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험철폐안은 교육제도의 한 개의 진보된 형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발달과 형식의 變轉은 그 시대와 역행할 수 업고 그 환경과 배치될 수 업스니 시험철폐란 그 자체의 성질상 진보적이오 또 시대정신에는 適宜히 영합됨이라 하겠스나, 그러나 조선과 가튼 특수한 국정을 가진 곳에는 그 환경과 배치되는 약간의 점이 업지 아니한가 疑念을 품게 됩니다.⁵³⁾

그런가 하면 조선의 학교사정과 입학경쟁을 보면, 정기시험의 폐지는 한낱 이상에 불과하며, 보다 중요한 “살도하는” 입학경쟁률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51) 주요섭, 《동아일보》, 1930. 11. 14일자

52) 김창제, 《조선일보》, 1930. 9. 31일자

53) 장용하, 《조선일보》, 1930. 10. 14일자

1930년 고등교육기관의 입학경쟁률은 평균 4:1이다. 조선인 지원자가 대부분인 사립전문학교의 경쟁률은 2:1이지만, 관립전문학교는 5.7:1, 경성제국대학은 7.5:1에 이를 만큼 입학경쟁이 치열했다.⁵⁴⁾ “입시지옥”이 치열한 당시, 중등학교의 학내시험은 시험 본래의 역할, 즉 학생들의 학업상태를 진단하고 교사의 교수방법을 점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다. 결정적 시험이 있는 곳에서 다른 시험들은 종속적 위치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즉 입학시험이 결정적인 상태에서 학기시험, 학년시험은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한 준비전이거나 또는 입학시험을 위한 내신용(당시 “소견표”)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학시험 문제가 존재하는 이상, 정기시험의 폐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 방안의 실시가 중등학교에만 한하되 상급학교의 입학시험은 의연히 존재해있는 것은 제도상 큰 모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등학교에서 시험으로 인한 모든 폐단을 없시하자는 주장이 금번시험철폐를 하게 된 동기이면서 우흐로 상급학교의 입학시험만은 엄연히 존재해 있다는 것은 국부적 해결에 급급한 성의는 보힌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조화를 일흔 적이 대시험철폐의 스스로 갖는 결함의 하나일 것입니다.⁵⁵⁾

현재의 고보교란 결국 상급학교 입학준비 기관가치 되어 있는데 아모리 시험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입학률을 경쟁하다십히 하여 생도들을 상급학교로 보내게 되고, 또 상급학교에서는 각기 출신한 학교에서 채점한 성적표를 요구하게 되는 이상, 정기의 시험은 물론 폐하드래도 평상시의 학과 성적을 채점 안이 할 수 업슴으로 교원이나 생도가 다가치 어려운 경우를 당할 것이다.⁵⁶⁾

그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교육구조를 고려치 않은 제도 변경은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논리이다.

모든 논자들은 규정변경에 대해 사회정치적 해석은 정지하고, 다만 교육적 해석

54) 이경숙, 「1920·30년대 “시험지옥”의 사회적 담론과 실체, 『한국교육』, 제32권 3호(2005), 42쪽.

55) 김윤경, 《조선일보》, 1930. 10. 4일자

56) 이윤주, 《별건곤》, 제35호, 104쪽.

을 하고자 노력한다. 비록 “정당한 이론상 討究과 실제에 부합여부를 상량”하였다면 “대중에게 수긍되었을 것이며…교육자의 맞는 곤경이 적었스리라 57)하는 안타까움은 표시하지만, 대부분의 논자들은 시험철폐가 현대교육의 시세라는 점을 인정한다. 기본적으로 수용의 자세에서 여러 가지 경계점을 고려하고 대안을 만들고자 시도한다. 학급당 6~70 명인 교실에서 교사가 평소에 고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된다. 숙제검사, 예·복습 검사, 수업 중 문답, 간단한 지필 입시고사, 객관적인 성적 산출법에 따른 고사 등이 제안된다. 이러한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대안이 되기에는 학교의 현실환경이 너무 고단하다

<표 3> 1930년“시험폐지”규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58)

보성고보 교장 정대현	1. 별 다르지 않고 정기보던 것을 무상시로 간단히 시험하는 것 2. 일본에서는 이 체도를 실시하였다가 다시 환원하는데도 있음 3. 일요일, 공휴일 다음 날에는 시험을 보지 않기로
휘문고보 교장 이운주	1. 상급학교 경쟁률이 높은 이상 정기시험 폐지가 큰 의미가 없다 2. 시간마다 질문, 숙제 등으로 채점하다 보면 생도의 소질을 알게되고, 사제간 친밀함이 쌓이는 긍정적 측면
중등학교 교무주임 안일영	1. 학교에 시험위원회를 결성 대책구안, 생도의 호별방문을 통해 개개인의 면학심을 향상시킬 방법 구안 2. 언제 시험일지 몰라 학생들의 불안 기죽게 됨을 염려하여 매월20일 이후로 내정하여 한달에 한번씩 시험예정
중앙고보 교무주임 백봉제	1. 정기시험의 폐단이 없어지고 학생들이 평상공부를 하게 될 것 2. 운동선수에게는 채점표준이 따로 필요
이화여고보 김창제	1. 찬성: 지력만을 묻는 시험제도의 한계와 생도의 건강을 해치는 정기 시험제도 폐지에 찬성 2. 문제점: ① 현 교육시설에서 가능한지 의문, ② 학생들을 게으르게 할 우려, ③ 공평정대한 처리가 어려움
배제고보 장용하	1. 시험철폐 자체는 진보적이고, 시대정신에 맞지만 교육시설과 용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 2. 불시에 하는 시험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

57) 장용하, 《조선일보》, 1930. 10. 1일자

58) 「각 고등보통학교의 시험폐지후 그 대책」, 《별건곤》, 제35 호(1930. 12), 104-105 쪽 「시험철폐 문제, 그 이전과 그 이후(1~9회)」, 《조선일보》, 1930. 9. 28-10. 16 일자를 참고로 교사들의 입장을 요약 정리한 것임. 이들 중 휘문고보의 이운주는 《별건곤》과 《조선일보》에 중복 등장한다

	3. 운동선수에 관한 대책 필요
중등학교 교장 최규동	1. 환경문제보다는 교육계내부의 결속과 연습 씻기 필요 2. 교사는 더욱 책임감을 학생은 태만의 습성을 소멸하도록 각고 노력해야 함 3. 학칙개정이 필요
배화여고 김윤경	1. 기존 폐단 없애는 장점 2. 이론적 약점 입학시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국부적 해결이며 기계적·주입적 교수방법으로는 어려움 3. 실시방법은 매시간 약2분간 종이에 복사한 문제로 시험 4.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기보다 예고하는 방법이 좋을 듯
동덕 교장 조동식	1. 종래시험은 시험위한 공부, 건강악화의 폐단 2. 새로운 제도를 위해 ① 학생의 자발적 노력, ② 선생과 학생간의 감정이 원만
숙명여고 이원식	1. 종래시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필요 2.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교사들의 신교수법을 창출해야 함 3. 문제점: 종래시험으로 학생의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새 제도로는 학생자신의 태만과 무식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
경신학교 안재학	1. 새로운 계기로 삼아 조선교육계를 일신 2. 곤란: 소학교의 시험치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염려 3. 방법: 예습·복습 여부, 출석 태도로 공평하게 점수계산

위의 논의가 교사들의 담론이었다면, 학생들은 정기시험 폐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비록 영어수업에 제한된 설문이고 응답한 학생 수가 적지만, 정인섭의 설문은 학생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전체 41명의 학생 중 시험을 완전히 폐지하는데 찬성하는 이가 27명, 반대하는 이가 11명이다. 정기시험의 폐지를 찬성하고 평상시 시험을 희망하는 이가 17명, 정기시험을 유지하자는 학생이 13명이다. 시험이 없이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학생이 3/4에 가깝다< 표 4> 참조).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 다수는 정기시험 폐지를 환영하였다.

교육계가 중심이 되었던 논쟁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보다 교육평가를 교육학의 담장을 너머 국민적 관심사로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이전에 시험제도에 관한 논의는 입학시험에 대한 학무국의 지침, 교장단의 결정과 같은 행정적인 결정사항이거나 교육학계 내부의 논의사항이었을 뿐이었다. 정기시험 폐지로 말미암아 평가를

광장으로 끄집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요섭과 정인섭은 교육평가의 체계화 논의를 주도하고 대중언론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평가의 다양한 방식 소개, 정상분포곡선에 입각한 평가방식, 시험내용의 타당성(외국어교과에서 회화의 중요성) 등을 대중의 언어로 만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시험을 사회적 행위와 연관지워 보지 않고 철저히 교육행위로 제한시켜 보는 논의방식은 식민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험의 사회정치성을 의문하지 않고 시험의 기능과 방법에 매몰되게 하는 한계가 있다.

<표 4> 시험관련 설문에 관한 학생 41명의 답변⁵⁹⁾

문항 번호	설문내용	학생들의 답변
1	영어연구의 목적	▶외국문화수입연구(20) ▶사교, 회화(4) ▶수험·입학(5) ▶洋行(2) ▶상식(5) ▶취직(1) ▶강제(1)
4	시험의 선호도	▶매우 좋아함(7) ▶좋아함(12) ▶보통(16) ▶매우 싫어함(4)
5	시험의 완전폐지	▶찬성(27) ▶조건부 찬성(1) ▶사람에 따라 다름(1) ▶반대(11) ▶조건부 반대(1) ▶불가능
6	정기시험의 폐지	▶찬성:平常 시험 희망(17) ▶양자부정(6) ▶모르겠음(1) ▶반대:정기시험 요구(13) ▶양자필요(1)
7	시험없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없을까	▶가능(27) ▶불가능(13)

VI. 규정변경 후 학교의 실정

학무국은 규정변경 후 모든 중등학교에 공통적인 대안이나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시험결과를 기록하는 성적표 양식도 이전과 다름없이 학기별 성적을 기입 하도록 되어 있고, 상급학교는 입학시험에 재학 중 성적일람표를 요구하였다 정기시험 폐지 이후 변경안이 실시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학무국의 문건

59) 설문 총 24개 항목 중 영어과 교육과 관련된 설문은 생략하고 이 연구에는 “시험폐지”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다시 작성한다. 질문내용과 답변은 쉽게 알 수 있게끔 바꾸어 쓴 것이다 () 안의 숫자는 응답 인원수를 나타낸다(정인섭, 「시험철폐 후 영어 성적고사의 私案」, 《조선일보》, 1930. 12. 9~19일자).

도 발견되지 않는다. 중앙고보 교무주임 백봉제 교사의 “비록 총독부령으로 그리 한 전달이 왔다하더라도 반드시 그 제도를 쓰란 말은 아니요, 그것의 채용여부는 학교당국의 임의인 모양”⁶⁰⁾이라는 말처럼 변경안을 실시하는 방법은 학교에 따라 달랐다.

배재고보 교무주임 김동혁은 “시험 기일은 발표하지 안으나 매월 20일 이후로 내정해두고 한 달에 한번” 간략한 형식으로 시험 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관립 중학교(경성중학교)에서는 대체적인 표준안을 마련하는데⁶¹⁾ 이는 다음 해 1931년도에 경남 학무과가 각 중등학교에 통첩한 내용⁶²⁾과도 다르지 않다.

- 一. 平素의 學習態度, 豫習, 複習, 實驗, 實習 及 一般敎場內의 態度를 個人別로 留意하여 考查資料로 할 일
- 二. 授業時間 中의 技能熟練程度 口問應答板書 等の 成績蒐集에 힘쓸 일
- 三. 學習의 成績物(書取, 作文, 圖畫, 習字, 實驗, 實習, 宿題, 課題 等の 成績物)을 點檢하여 考查資料로 할 일
- 四. 學習帳을 提出시켜서 檢閱을 할 일
- 五. 授業時間 中에 隨時 筆答을 課하여 考查資料로 할 일

실제로 각 학교에서는 어떻게 실시하는가. 『경북중고등학교 70년사』와 『계성90년사』의 학교일지초를 살펴보면, 1930년 이전의 학교일정에는 학기시험이 표기되어 있지만, 1930년 이후에는 학기시험 일정이 사라진다. 그리고 1932년도 배화여자고보 교우회지 『배화』 제4호⁶³⁾를 보면, “본교에서 년중에 행한 일”에 1930년 3월 17일 “제3학기시험을 마치다”, 7월 9일에 “제1학기시험을 마치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10월 8일자에는 “학기시험철폐를 선언하다”라고 적혀 있고, 더 이상 학기시험을 친 날이 표시되지 않는다. 호수돈여자고보의 31년도 “學校之報”

60) 백봉제, 《조선일보》, 1930. 9. 28일자

61) 최진순, 「올해 일년 조선은 엇더케動했나?」, 《별건곤》, 제35호(1930. 12), 14쪽. 경성중학교는 성적고사재료로 “1. 학습테도, 예습, 복습, 실험 및 일반학습테도, 2. 수업시간 중에 행하는 口問, 應答, 판서성적, 3. 학습성적, 서취, 작문, 습자, 실험, 실습, 숙제 외 성적물, 4. 학습장의 검열, 5. 수업시간에 행하는 필답”을 사용한다는 적고 있다.

62) 《동아일보》 1931. 1. 29(7)일자

63) 배화여자고보보통학교 교우회, 『배화』, 제4호(1932), 171~173쪽.

에서도 학기시험 날짜 표기는 없다.⁶⁴⁾ 이로 미루어 보아 1930년 규정개정 이후 각 학교들의 공식일정에서는 학기시험이 사라진 것 같다. 대신 학교현장에서는 임시시험이 자주 행해졌다.

재래의 학기말 학년말의 정기제는 폐지되었으니 문제업지마는 임시시험은 현재 각 학교에서 회수를 증가하여 (경성사범에서는 매학기 최소 4회) 평시학습을 충실케 하려하고 있는 것 같다.⁶⁵⁾

그리고 30년 이후 시험거부 관련 기사들에서도 특정과목 시험거부⁶⁶⁾가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서도 일정기간 일제히 치는 학기·학년시험은 줄어들 듯 하다.

잡지 《동광》⁶⁷⁾에서는 변경안이 반포되고 1년 후 실제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경신학교의 군병빈 교사는 “시험철폐후 성적의 좋고 나쁜 것 아직 알 수 없소”라고 답변을 하여 적어도 “시험철폐”가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普修 김지태는 “학교에서 성적의 채점방식을 학술점 80, 근만점(勤慢點) 20 합하여 백점을 만점”으로 하며, 고사방법은 “제1종 고사: 평소성적 문답, 自演, 학습태도, 제2종 고사: 정사1 학기 2 차”로 하고 있다고 밝힌다. 시험폐지 초기에는 생도들이 공포심을 느낄 만큼 어렵고 “건강에 특히 머리에 적지 않은 해”를 받았다고 토로한다. 배재고보의 신봉조 교사는 “신제도란 이상만 좋았지 실행에는 곤란”이 적지 않다고 비판한다. “1 학급에 6, 70 명 되는 생도에게 문답이나 自演으로 일주하자면 그 시간이 대단이” 걸리며, 또한 시험폐지의 성적 결과도 구제도에서나 신제도에서나 큰 차이가 없음을 시험성적 비교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배화고보의 김윤경 교사는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은 수업 전 문답을 하고,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은 수업 전에 필기답안을 하고, 그 외 숙제내기, 교과서와 필기장을 조사한다고 밝힌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공부 잘하는 자는 재미있어 하지마는 잘못하는

64)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교우회, 『好鐘』, 제10호(1931), 130~131쪽.

65) 정인섭, 「시험철폐후 영어 성적고사의 사안(4)」, 《조선일보》, 1930. 12. 12(4)일자.

66) 대구고보의 영어시험거부(『경북중고등학교 70년사』), 송도고보의 동물시험거부(《동아일보》, 1931. 11. 13), 진주고보의 조선어시험거부(《동아일보》, 1936. 3. 30) 등

67) 『教育界의 三大問題』, 《동광》, 제27호(1931. 11), 35~39쪽 여기서 교육계의 삼대 문제로 1. 수하여행의 가부, 2. 선수제도의 가부, 3. 시험철폐의 실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듣는 형식이다.

자는 펍 괴로워하는 모양입니다”라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험제도는 변하여 고사제도로 개정되었다 하지마는 역시 학기시험준비에 땀이 나고 조림이 오오”⁶⁸⁾라며 정기적인 시험의 온존을 입증한다. 1931년도에 대구사범학교를 입학하였던 박순직⁶⁹⁾ 또한 학기 시험은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또 1932년 대구고보에 입학하였던 안장호⁷⁰⁾ 역시 고보시절에 정기시험이 있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시험폐지 규정에 대해 질문하니 “시험은 그때 봤는 것 같애. 시험 봐야 성적을 매기지. 시험 안보면 성적을 매길 수 없지”라고 답변하였다. 폐지 전이나 후나 시험을 통한 석차 매기기가 변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상에서 보건대 30년 “시험폐지” 규정에 따라 정기시험은 공식적 일정에서는 사라졌다고 보인다. 그리고 일제시대 각 도의 교육방침이 독자성 없이 조선총독부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체제였다는 점, 경성중학교의 대체안과 경남지역 통첩안이 대체로 일치하고, 또 개정 1년 후 학교실시상황조사에서도 대체안이 비슷한 점으로 보아, 많은 학교들은 학무국의 안을 수용하여 평상시 문답, 학습태도, 임시시험 등을 성적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공식 일정과는 달리 석차를 내기 위해 정기적이든 임시적이든 시험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는 평가요소들이 부가되었다. 요약하면 정기시험 폐지 규정은 석차위주의 교육질서는 그대로 둔 채, 제도운영상의 변경을 통해 학생들을 관리하는 장치였다.

VII. 결론

이 연구는 1930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발표한 “시험폐지” 규정과 그 규정의 배경, 그에 대한 교육 담론에 주목하였다. 일제시대 시험제도가 우리나라의 시험제도의 근간임에도 그동안 일제시대 시험제도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고, 더구나 “시험폐지” 규정에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없었다.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한 수많은 시험제도는 공정한 기회배분과

68) 『학생생활행진곡』, 《동광》, 제35호(1932. 7), 76 쪽

69) 2005. 7. 21일 면담.

70) 2005. 8. 1일 면담.

실력의 상징물로 선전되었으나,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시험제도는 자산차별과 민족차별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였다.⁷¹⁾ 이 맥락에서 보면 학교 내 정기시험을 폐지한 학무국의 규정은 교육적 목적을 넘어 역사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바로 규정이 개정된 1930년은 광주학생운동으로 동맹휴학과 백지동맹이 잦았던 시기였으며, 학생들의 학교 성적이 반영된 성적일람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참조자료였다는 점에서 보자면, “시험폐지” 규정은 저항하는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교육장치였던 것이다.

“시험폐지” 규정을 둘러싼 교육계의 담론은 오늘날 시험에 관한 담론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에 대한 명백한 반대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찬반이 아니라 적극 찬성의 논리와 비판적 지지의 논리로 양분되지만 담론을 생산하는 형식은 흡사하다. 학급인원수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할 것이냐, 교육자의 결의와 의지를 강조할 것이냐 하는 구조 대 의지의 문제, 시험폐지로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이 될까 게을러질까 하는 교사와 학생관의 문제, 채점 공정성에 관한 확신 대 불신의 문제, 시험폐지를 진보로 인식하느냐 입학시험이라는 구조 아래서 한낱 이상이라고 인식하느냐 하는 미래지향적 논리 대 현실중심적 논리의 문제로 논의가 전개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교육계는 일제시대 개발된 시험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시기 제국주의에 의해 양산된 시험에 관한 인식 즉 시험이란 성적과 석차로 매겨지며 그 성적과 석차가 사람의 사회적 쓸모를 결정한다는 인식과 시험에 관한 담론을 생산하는 방식이 아직 우리 교육계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지배담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때이며, 본 연구는 그 물꼬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官報>.

「각 고등보통학교의 시험폐지 후 그 대책」, 《별건곤》 제35호, 1930. 12, 104~105쪽.

「教育界의 三大問題」, 《동광》 제27호, 1931. 11, 35~39쪽.

71) 이경숙, 앞의 논문

- 「時相漫話」. 《별건곤》 제35호, 1930. 12, 60~63쪽.
- 「시험철폐문제, 그 이전과 그 이후(1~9회)」. 《조선일보》, 1930. 9. 28~10. 16.
- 「朝鮮苦」. 《개벽》 제49호, 1924. 7, 12~26쪽.
- 「학생생활행진곡」. 《동광》 제35호, 1932. 7, 76~79쪽.
- 「학해의 불상사 맹휴와 그 대책」. 《동광》 제19호, 1931. 3, 5~12쪽.
- 경북중고등학교칠십년사편찬위원회, 『경북중고등학교 70년사』. 서울: 경북중고등학교동창회, 1986.
- 계성90년사 편찬위원회, 『계성90년사』. 대구: 계성중고등학교, 1997.
- 구자학, 「교육시폐」. 《대한홍학회보》 제12호, 1910. 4, 40~47쪽.
-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교우회, 『배화』 제4호, 1932.
- 보성중고등학교, 『보성80년사』. 서울: 학교법인 동성법인, 1986.
- 정인섭, 「시험철폐 후 영어 성적고사의 私案」. 《조선일보》, 1930. 12. 9~19일자.
- 朝鮮總督府 學務局, 『朝鮮教育法規』. 서울: 行政學會印刷所, 1929.
- 조재호, 「중등학교시험폐지 가부 및 그 실시에 대한 일고찰」. 《별건곤》 제4호, 1930. 11, 32~35쪽.
- 주요섭, 「시험철폐와 그 대책」. 《동아일보》, 1930. 10. 19~11. 14(전 20회)일자.
- 최진순, 「올해 일년 조선은 엇더케 동했나」. 《별건곤》 제5호, 1930. 12, 13~16쪽.
- 學府編纂, 『普通教育學』. 서울: 韓國政府印刷局, 1910.
- 호수둔여자고등보통학교교우회, 『好鐘』 제10호, 1931.
- 김동환, 「일제강점기 진학준비교육과 정책적 대응의 성격」. 『교육사회학 연구』 제2권 제호 2002, 25~53쪽.
- 김소진, 「광주학생운동에 관한 일연구」. 『숙명한국사론』 제 권 1993, 143~168쪽.
- 미셸 푸코(저)/오생근(역),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 2003.
- 박철희, 「식민지기 한국중등교육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 백순근, 『일제강점기의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2003.
- 피에르 부르디외·장 클로드 파세롱(공저)/이상호(역), 『재생산』. 서울: 동문선, 2000.
- 손종현, 「일제 제3차 조선교육령하 학교교육의 식민지배 관행」.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송건호, 『송건호 전집 3: 한국현대사』. 서울: 한길사, 2002.
- 이경숙, 「1920·30년대 “시험지옥”의 사회적 담론과 실제」. 『한국교육』 제2권3호 2005, 35~59쪽.
- 이승원, 『학교의 탄생』. 서울: 휴머니스트, 2005.
- 天野郁夫, 『試験の社會史』,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5.

국 문 요약

이 연구는 1930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시험폐지” 규정의 배경과 이를 둘러싼 교육 담론에 관한 것이다. “시험폐지” 규정이란 오늘날 수행평가와 유사한 것으로, 중등학교의 학기·학년 시험을 폐지하고 평소의 고사로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구는 “시험폐지” 규정 발표의 사회적 배경으로 1930년 광주학생운동과 시험거부와 백지동맹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당시 교육계의 담론은 적극 찬성과 비판적 지지로 나뉘어진다. 적극 찬성자들의 논리는 이 규정으로 인해 교사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학생들은 자학자습하게 될 것이며, “시험폐지”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한편 비판적 지지자의 논리는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이 규정으로 오히려 채점의 공정성을 잃을 우려, 학생이 게을러질 우려, 무엇보다 6~70명인 학급당 인원수 때문에 평소 고사가 어렵다는 우려이다. 논의내용은 시험에 관한 오늘날의 논의와도 유사하다. 규정 발표 후 학교현장은 시험과 부가적인 평가요소들이 더해지는 평가를 실시하였고, 석차위주의 평가방식은 그대로 온존되고 있었다.

● 투고일 : 2006. 7. 10.

● 심사완료일 : 2006. 8. 29.

● 주제어(keyword) : 시험폐지 규정 (examination-abolition article), 정기시험철폐(abolition of the regular examination), 학내시험 거부(rejecting examinations), 백지동맹 (ending in blank examination papers as protest actions), 시험 담론 (examination discourse)